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32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허성무・박 정・이병진

이강일 · 김동아 · 윤준병

김문수 · 김병주 · 이재관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2024년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기술규제의 도입으로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문서의 건수는 4,337건으로,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재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고,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종합지 원센터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부설조직으로 설치되어 공공성 담 보에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 원활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안 제6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기술규제 제·개정 시 통보문 등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무역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사. 정부는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 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의 실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아.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둠(안 제22조).

법률 제 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을 말한다.
- 2. "무역기술장벽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 다.
- 3. "국내기술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품·서비스·시스템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기준[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법령 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공고, 훈령 등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규정한 것

-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기술규정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 4. "성문표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성문표준을 말한다.
- 5. "체약상대국"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을 말한다.
- 6.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이나 지역무역연합체 와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을 말한다.
- 7.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기술규제가 무역기술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기술장벽을 축소하기 위한 모범규제 관행(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의 투 명성·개방성·비차별성, 불필요한 무역 제한의 회피, 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동등성의 인정, 경쟁정책의 적용 등 무역 관련 주요 원칙, 관행 등을 말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공유 ·교환·전파 및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 제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 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대하여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무역기술장벽 대응 종합계획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 2.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3.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4. 무역기술장벽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사항
- 5. 무역기술장벽 관련 민간기관·단체 및 정부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6.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에 관한 사항
- 7.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8.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의 협상에 관한 사항
- 9.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 10. 무역기술장벽 관련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의 협상에 관한 사항
- 11. 무역기술장벽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12.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3.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국내기술규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종합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 ①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무역기술장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2.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 3. 무역기술장벽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조정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2.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설치 · 운영

- 제8조(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협정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기술장벽 질의처(이하 "질의처"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질의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내기술규제의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통보
 -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문서의 접수 및 보급
 - 3. 회원국의 국내기술규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 4. 특정무역현안(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에 서 무역기술장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 한 안건을 말한다)에 대한 대응
 - 5.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 참석 등 무역기술장벽 해소 대응
 - 6.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질의처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통보문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 규제의 제정·개정이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문서(이하 "통보문"이라 한다)와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 규제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 2.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기관의 지침 및 권고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지침 및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적합성평 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을 경우 지체 없이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문 및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세계 무역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로부터 통보받은

제4항의 통보문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날부터 6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안전·보건,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보 문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1.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
 - 2. 관련 문서 및 정보의 제공
 - 3. 통보문에 대한 의견 제시
 - 4. 국내기술규제의 시행 유예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질의를 받으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내용을 해당 회원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의 협상, 이행 및 운영의 점검
-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의 개발·채택 및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양국 간 협의 및 산업계 지원
- 3.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 관련 정보교환
- 4.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적합성평가 결과의 인정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의 지정 요청에 대한 협의
- 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그 밖에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 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무역영향분석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내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하 "무역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무역영향분석의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무역영향분석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및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 규제·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국내기술규제의 성문표준 인용 정보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고, 통보문의 통보 업무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종합 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 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의 실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9조(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 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 ①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 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종합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종합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목적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4. 자산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8.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종합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 상자워부장과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기술규제 개선·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 2. 국내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현황 등의 자료 수집·조사·번역 및 분석 업무의 지원과 관련 통계의 작성
- 3. 제9조제3항에 따른 검토 업무 지원
- 4. 제1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 5. 제15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 6. 제17조에 따른 국내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
- 7.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8.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및 개발도상국 지원
- 9. 중소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지원
- 10. 그 밖에 종합지원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종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① 국민에게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중 요성을 널리 알리고 무역기술장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 여 매년 6월 25일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포상·표창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24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2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종합지원센터의 임직원과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